

“청력보건법안”에 대한 한국청능사협회 의견

2018-10-24

법안에 대한 의견 : 반대

이유: 반대

- 1) 청력 및 난청과 관련된 교육, 예방, 관리를 모두 질병과 치료의 관점에서 보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시행한다는 점
- 2) 중앙장애인난청진료센터, 지역장애인난청진료센터, 청력보건협회 등 불필요한 기구의 신설로 인한 재정낭비
- 3) 모든 정책과 지원이 의료인력 중심으로 제공되며 이는 특권층의 권력, 수익, 비리 축적 가능성 있음
- 4) 난청과 관련된 의과적 치료는 교육, 예방, 관리, 재활과 분리해야 하며 청력보건법의 이름으로 모두 통합하면 난청 및 청력관리, 재활과 관련된 모든 행위가 의사의 지도하에 이루어질 수 있음
- 5) 거창한 청력보건법안은 현재 불필요하며 세금낭비이며, 의사 이외의 청각관련 종사자들에게 규제로 작용될 수 있음
- 6) 청력보건법안과 같이 의료적 치료에 관점을 둔 거대 법안이 아닌 재활, 복지, 서비스, 관리 측면에서 소비자의 필요에 의한 정책과 법안이 이루어야 함
- 7) 난청과 청력재활을 복지, 기능, 사회참여, 재활 측면에서 접근해야하며 의료적 치료로만 접근하는 것은 구시대적 위험한 발상임, 이는 WHO의 모델과도 위배됨.
- 8) 신생아 선별검사를 포함하여 난청과 관련된 의료적 처치와 관리는 현재로서도 병원을 중심으로 충분히 잘 이루어지고 있음, 우리나라 병원의 의료적 공공 접근성은 세계 상위 수준임
- 9) 난청을 질병적 차원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분리하고, 모든 연령의 난청인, 청각장애인의 예방, 교육, 사후관리, 재활, 기능, 복지, 사회참여를 도울수 있는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게 먼저임, 재반지원 시스템을 소비자와 여러 청각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합의하고 논의하여 필요에 따라 적절한 제도를 마련해야함, 전문인력 없는 제도는 아무런 효과가 없고 막대한 재정 손실을 초래함

10) 청력보건의 주체인 청각전문가의 선정 기준 필요: 제8조 청력보건의사업의 시행에 시행 인력의 정의를 '이비인후과의사 및 청력보전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으로 모호하게 기술. 청력보건의사업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여 선별 및 기초관리에 초점을 둔 교육과 검진인지 중증대상자를 위한 관리프로그램인지 정의를 명확하게 설정하여 그 시행주체를 정확하게 지정해야 할것임.

- 치료중심의 접근법일 경우에는 이비인후과의사가 시행 주체로 관리인력이 아니라 실제로 투입되어 업무를 진행하는 인력으로 지정해야 될것이며, 청각교육, 예방 및 선별검사, 재활위주의 보건의사업이라면 청각전문가 인력의 정의를 교육부의 청각학 교육 인력 상태, 국가표준(보청기적합관리), 보건복지부 고시 제167호, 국가직무능력표준(NCS-청각관리) 등을 고려하여 실제로 업무에 투입될 인력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할 것임.

11) 새로운 법으로 관리단체와 새로운 시설을 만들고 예산을 낭비해가며 권리를 부여 하기 보다는 국민건강증진법 제2장 국민건강의관리 제18조 구강건강사업 다음 조항으로 청력보건 또는 청력건강사업 조항을 추가해서 관리하면 될 것 이고 청능사를 국가 자격으로 인정하고 각 지역의 보건소에 그 종사자로 청능사를 채용한다면 일자리 창출이 될 것이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청력보건 교육 및 관리가 충분히 될 것임.